

1. 5-06-039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-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자상담 및 신청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</p> <p>본인은 ~ (이하생략)</p> <p>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</p> <p>①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,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. 2.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,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합니다. <p>②제1항의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()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, 그 이후에는 매()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(최종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)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자상담 및 신청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</p> <p>본인은 ~ (이하생략)</p> <p>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</p> <p>①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,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. 2.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,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. <p>②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()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, 그 이후에는 매()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(최종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)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>-단기코픽스연동 변동금리대출 신설에 따른 단기코픽스금리 추가</p>

<p>제3조 중도상환수수료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1~6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 설)</u></p> <p>제4조 ~ 제16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	<p>제3조 중도상환수수료</p> <p>① (좌 등)</p> <p>② (좌 등)</p> <p>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1~6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.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</u></p> <p>제4조 ~ 제16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	<p>면제사유 신설</p>
---	---	----------------

2. 시행일 : 2013년 4월 8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: 시행일(포함) 이후 신규, 대환, 재약정, 기한연장 승인 건부터 적용